■ 진영공업 윤리규범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 모두에 대해 직원 상호가, 협력업체 및 당사의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임직원 윤리규정을 정하고 윤리실천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임직원 및 협력업체, 사내에 상주하며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협력업체에는 진영공업과 각종 거래를 갖는 모든 회사가 포함된다. 단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주관부서)

본 규정 집행의 주관부서는 본사 관리팀, 각 공장의 담당부서로 한다.

제4조(윤리규정의 정의)

회사의 비전과 경영방침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으로서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개인의 품위 및 회사 명예를 유지하고 긍지와 자부심으로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제하기 위한 도덕적 기준.

제5조(관련규정 적용)

본 규정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리의 처리는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본규정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장 직장윤리규정

제6조(직장윤리 기본규정)

- 1.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각자의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2. 주어진 직무는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 3. 회사의 재산을 잘 유지관리하고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보호한다.
- 4. 관행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문제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 5. 자기 분야에서 회사를 대표하고 있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품위 있게 행동한다.
- 6. 업무수행시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으로 행동한다.

제7조(윤리규정 준수사항)

- 1. 임직원은 직장 윤리의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직장문화를 지향하며 오해 받지 않는 행동을 통하여 신뢰를 형성한다.
 - 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동차 부품산업의 핵심이라는 자세로 매사에 임한다.

- 다. 협력업체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청탁 등 어떠한 부당 행위도 하지 않는다.
- 라. 직무 관련 정보를 무단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하지 않는다.
- 마. 모든 거래는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에 의하여 추진한다.
- 바. 사내 직원간 부당한 업무 요구 및 직권을 이용한 청탁 행위를 배격한다.
- 사. 국내외에서의 모든 활동은 해당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
- 아. 임직원은 동료 및 관련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과와 효울을 높인다.
- 자. 기타 상기 제7조의 규정에 벗어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차. 개인과 회사의 이해 또는 회사 내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행동하여야 하며 다른 부서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위법, 부당한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자기개발)

임직원은 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으로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통해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9조(직장 내 성희롱 방지)

직원은 성희롱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직장의 분위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의욕 상실, 업무생산성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위법행위임을 인식하고, 회사의 성희롱 방지규정을 준수하며, 이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직장상호간의 동료의식 재고)

직장의 상,하 동료는 한 가족으로서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고 따르며 선배는 후배를 존중하며 올바르게 이끈다.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대하여는 열과 성을 다하여 이행한다. 그러나 그 지시가 명백히 위법, 부당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시정되지 않을 때는 해당 임원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직원의 위 보고사항을 공정하게 심의 처리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기하여서는 아니된다.

3장 사회에 대한 책임

제11조(건전한 기업활동)

회사는 지역사회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각종규범을 통제기준을 준수하며, 건전한 기업문화 창달에 노력한다.

회사는 국민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행위는 하지 아니하며,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부조리를 배격한다.

제12조(사회발전에 기여)

회사는 고용창출과 납세 기타 각조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회사는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적극 지원하다.

제13조(부정청탁 금지)

회사는 어떠한 부정 청탁도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의 청탁이나,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청탁은 예외로 한다. 임직원은 정당하지 아니하며, 사회 통념상 어긋나는 어떠한

응대와 청탁도 행하지 아니한다.

4장 규정위반에 대한 처리

제14조(윤리규정 위반사항 신고)

- 1. 임직원은 윤리구정 위반사항을 인지한 때 또는 제3자로부터 그러한 사항을 접수한 때는 반드시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윤리경영추진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 2. 회사는 내부 비리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 3. 내부 비리 신고자에 대해 그 사실을 이유로 보복 행위를 하는 자는 사내 규정에 정하여 범위 내에서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

제15조(윤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리)

- 1. 본 규정에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부서(팀) 또는 감사실은 이 사실을 관련 서류 및 조사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2. 주관부서는 통보 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징계위원회 규정에 의한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 3. 연루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거래중단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회사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변상 조치를 한다.
- 4. 협력업체의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즉시 조치를 의뢰하고 회사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협력업체에 대해 변상 조치를 한다.

제16조(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 1. 윤리구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는 사내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 징계위원회 규정에 없거나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주요 징계대상 및 징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징계대상

- 1. 협력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직권을 이용한 금품요구, 직위를 이용한 청탁, 압력행사 등.
- 2. 사내 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수수, 직권을 이용한 금품요구, 직위를 이용한 청탁, 압력행사 등.

나. 징계내용

- 1.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수수시 : 해당직원 징계조치, 협력업체 거래 중단(재발시 영구제명)
- 2. 직위를 이용한 청탁, 압력행사시 : 징계위원회 심의 후 징계여부 결정

제17조(윤리규정 위반 제보자에 대한 포상)

- 1. 윤리규정 위반사실에 대한 제보자에게는 제보내용이 사실로 확인 될 경우 확인 금액의 10%를 현금으로 포상한다.
- 2. 회사는 윤리규정 위반사실에 대한 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을 준수한다.

부칙

이 윤리강령은 "회사"와 "회사의 모든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업체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을 이해시키고, 적극적인 동참을 권유함을 통하여 발전적 상생 관계를 도모토록 한다.

재정일 2022년 04월 25일